#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86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민형배·주철현·소병훈

박지원 · 송옥주 · 이개호

정동영 · 김문수 · 이성윤

백승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개선을 위한"을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수의 상한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교육여건 <u>개선을 위</u>	③개선을 위		
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	하여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	의 상한과		
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			
시하여야 한다.	··		